

# 팔프·製紙工業의 育成發展 施策에 對한 提案

曹 景 鎬

## 1. 머리말

팔프를 主原料로하는 製紙工業은 우리나라의 生活水準向上과 產業發展에 比例하여 需要量이 增加되는 紙類所要에 마주어 近來에 와서는 製紙工場의 急速한 新設 및 擴張으로서 充當되고 있으나 이 部門의 產業이 體系的으로 發展되지 못함과 그原料인 팔프가 거의 國外의 輸入品에 依存되어 왔음으로 그 原料生產의 確保와 均衡된 生產體制가 要望되고 있다.

팔프·製紙工業은 그 最終製品인 종이가 廣範圍하게 使用되고 있는 것은 周知의事實로서 日常生活의 日用品에서 시작하여 (화장지, 신문지, 일기지, 포장지, 복사지, 여과지, 절연지……) 文化, 產業用材로서 全面的으로 聯關되어 있다. 그러므로 팔프·製紙工業은 他產業의 發展으로 促進될 수 있는 것과 同時에 이의 發展으로 全體產業을 促進시킬 수 있는 工業이기도 하다.

現在 우리나라는 몇몇 기간산업과 새로운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키 為하여 시책上 지원을 하든것을 지양하고 全體產業의 均衡된 發展을 유도하고자 노력할 段階에 이르렀다. 이 時點에서 팔프·製紙工業도 그 主要性과 育成方案을 再檢討하여야 될 것으로 믿어 팔프·製紙工業의 育成을 為한 當面課題를 解決하는데 必要한 事項을 嘘氣시키고자 한다.

1. 팔프製造工場을 建設하기 為한 準備
2. 팔프製造用 原木材 對策講究
3. 팔프生產을 為한 技術的問題對策 研究機關 및 技術訓練機關
4. 팔프市場性調查
5. 製紙工業의 體系化

이와 같은 뜻에서

다음과 같은 提案趣旨要點과 法草案을 參考的으로 提示하여 보는 것이다.

## 2. 提案趣旨의 要點 育成發展

### (1) 팔프工業育性：育成法制定必要

- ① 經濟單位 팔프工場建設 토록 政府支援
- ② 原料(原木) 輸入方案研究, 造林計劃

<技術士(化工部門)>

③ 研究 및 訓練機關設置

### (2) 製紙工業整備：新聞用紙, 印刷用紙, 크라

프트紙, 生產工場別 合併策

需要量에 依한 設立認可, 生產量調整

### (3) 팔프製紙 담당行政部署 強化 및 統合

① 商工部 有機化學課內에 있는 製紙係를

課로 昇格시켜 팔프工業을 支援할것.

② 工業研究所 製紙研究室, 林業試驗場 林產化學科, 조폐公社 제지과 統合

(4) 팔프工場建設推進會

- ① 政府支援策
- ② 業界需要者指導
- ③ 팔프用原木輸入策(美國·濱洲·南洋等地)
- ④ 技術研究 및 調查團 等을 講究

3. 팔프 製紙工業育成法案(草案)

팔프製紙工業育成法案

第1條 (目的) 이 法은 팔프, 製紙工業을 合理的으로 有成하여 國民經濟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適用範圍) 이 法은 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商工部長官의 指定을 받은 者에 限하여 適用한다.

第3條 (施設 基準) 이 法에서 施設 基準이라 함은 一定한 場所에서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施設을 가추는 것을 말한다.

1. 木材, 化學팔프 年間拾萬頓以上을 生產할 수 있는 施設
2. 一年生 初本을 使用하여 年間 參萬頓以上 의 팔프를 生產할 수 있는 施設
3. 鞣皮纖維 팔프를 年間( )頓以上을 生產 할 수 있는 施設
4. 故紙 紙屑을 再生하여 年間( )頓以上 의 팔프를 生產할 수 있는 施設
5. 年間 新聞用紙 ( )頓
6. 年間 印刷紙 ( )頓
7. 年間 크라프트紙( )頓

第4條 (팔프, 製紙工業者의 指定) 商工部長官은 大統領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다음 各號一에 該當하는 者를 指定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1. 前條의 規定에 依한 基準에 適合한 施設를 가추어 팔프製紙工業을 營爲 하는者
2. 前條의 規定에 依한 基準에 適合한 施設을 가추어 팔프製紙工業을 營爲하고자 하는者

로서 팔프·製紙工業의 均衡된 發展에 寄與한다고 認定되는者

第5條 (事業의 開始) 前條 第2號의 規定에 依한 팔프·製紙工業者は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안에 當該事業을 開始하여야 한다.

第6條 (施設의 變更) 팔프·製紙工業者は 그 施設의 規模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7條 (政府 支援) 政府는 化學 木材팔프 年間 2拾萬頓 以上을 生產할 수 있는 증해漂白乾燥의 一貫 工程을 基準으로 하여 第4條의 規定에 依한 指定을 받은 者로서 그 資本金의 貳分之壹 以上을 政府 또는 政府가 指定하는 者가 出資할 境遇에는 다음 各號의 行政 및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1. 長期 低利의 外資導入
2. 原料購入(木材)
3. 機資材의 供給
4. 港灣施設
5. 用水施設
6. 電力施設
7. 道路施設
8. 鐵道施設
9. 第1號乃至第8號에 附帶되는 事業

第8條 (原料 機資材의 供給) 政府는 等3條 第1號의 施設을 基準으로 하여 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을 받은 者에 對하여 原料의 購入, 機資材의 供給等에 關하여 必要한 行政 및 財政上의 支援을 할 수 있다.

第9條 (共公料金의 割引) 政府는 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을 받은 者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期間동안 鐵道運賃料 港灣使用料 用水料 電氣, 까스料를 割引할 수 있다.

第10條 (原料供給者에 對한 支援) 政府는 팔프·製紙用으로 (商工部長官, 農林部長官이 指定하는 價格으로) 原木, 或은 原料纖維材를 生產 및 供給한 者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

하는 바에 依하여 貿易去來法에 依한 輸出을  
한者에 準하여 優待한다.

**第11條** (原料의 輸入) 第3參 第1號에 該當  
하는 施設을 가진 工業者가 外國으로부터 原  
料를 購入하거나 그 輸送契約을 締結하고자 할  
때에는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한다.

**第12條 (資金造成)**

1. 政府는 財政資金에 依하여 長期 低利의 팔  
프·製紙工業 育成資金을 造成할 수 있다.
2. 政府는 팔프 工業育成資金을 造成하기 爲  
하여 必要한 때에는 國債을 發行할 수 있다.
3. 前項의 規定에 依한 國債發行에 關하여는  
產業復興 國債法을 準用한다.

**第13條 (監督)** 商工部長官은 팔프 종이 需給  
의 円滑을 期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팔프  
製紙工業者에 對하여 生產供給價格 및 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다.

**第14條 (研究 및 技術訓練 機關)**

1. 政府는 팔프·製紙工業의 技術開發을 期하  
기 爲하여 必要한 研究機關 및 技術訓練 期  
間을 두며 이의 運營에 關하여는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2. 政府는 豫算의 範圍內에서 前項의 規定에  
依한 팔프 部分의 研究 및 技術訓練 機關의  
所要經費의 一部 또는 全部를 補助할 수 있  
다.

**第15條 (調査 및 報告)**

1. 商工部長官은 監督上 必要한 때에는 所屬公  
務員으로 하여금 팔프 製紙 工業者의 業務  
狀況이나 帳簿 書類 其他 物品을 調査하기  
할 수 있다.
2. 商工部長官은 팔프·製紙工業者에 對하여

業務狀況에 關한 報告를 命할 수 있다.

**第16條 (指定의 取消)** 商工部長官은 팔프·製  
紙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할 때에는  
第4條의 規定에 依한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1. 第5條 規定을 違反하여 期間안에 事業 開  
始를 않을 때
2. 第6條 規定에 依한 承認을 받지 않고 施設  
規模變更
3. 正當한 理由 없이 一定한 期間以上 工業을  
中斷할 때

**第17條 (팔프·製紙工業審議會)** 팔프·製紙工  
業에 關한 商工部長官의 諮問에 應하게 하기  
爲하여 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팔프·製  
紙工業審議會를 둘 수 있다.

**第18條 (罰則)**

1. 第6條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받지 아니하  
고 施設 規模를 變更한자 또는 第11條의 規  
定에 違反하여 팔프·製紙用原料를 購入한  
者에 對하여는 百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  
다.
2.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  
反한者에 對하여는 5拾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3.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를 拒否  
하거나 동조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虛偽로 한者에 對하여는 參拾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19條 (過怠料)** 第15條 第2項의 規定에 依  
한 報告를 하지 아니 한者에 對하여는 壹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20條 (施行令)** 이 法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